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개정 알림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11.5.25.)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그간 운영해 오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대한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금번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을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되, 비정산과 정산 내용을 삭제하여 위 ? 수탁자간 정산여부를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나. 일반관리비를 인건비 ? 경비 합계 금액의 6% 이내로 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적용토록 함
 - 다.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등

붙임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시청결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행정사무관 **김영** 과장 전결 03/27
정명규

협조자 주무관 **현미희**

시행 폐자원에너지과-550 (2018.03.27.) 접수 자원순환과-4946 (2018.3.27.)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http://me.go.kr
6-3동
전화 044-201-7401 /전송 044-201-7412 / k165y@me.go.kr / 대시민공개